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6. 3. 22. 공포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중 예탁주권의 몰수보전과 관련하여 변경된 근거 규정을 규칙에 반영하고,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탁주권의 몰수보전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예탁에 관한 근거 법률의 변경 등을 반영함(안 제10조)
-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 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말소등록

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구된 제10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 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에 따른 몰수보전 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0조에 따른 예탁유가증권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보전명령은 제10조의2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예탁주권의 물수보전)</p> <p>「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물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물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p> <p style="margin-left: 2em;"><u><신 설></u></p>	<p>제10조(예탁주권의 물수보전)</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p> <p>-----, 예탁결제원-----</p> <p>-----</p> <p>-----.</p> <p>제10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의 물수보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p>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물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581